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141
----------	------

제출년월일 : 2010. 3.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 o 내수면어업에 관한 분쟁, 허가의 우선순위, 어업보상 등에 관한 주요 현안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덧붙임

- 덧붙임:
1. 충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기타참고자료 (관계법령)

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 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조사를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수면어업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
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

관계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우선순위) ① 제6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면이 소재하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법인 기타 단체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신청한 어업과 동종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하여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8.3>

1.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수면에서 이 법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고자 하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 및 경영상태가 극히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도한 자

③ 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인의 대표와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군·구의 조례(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05.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시·군·구는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2007.4.11, 2009.4.22>

□ 수산업법

제86조(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 또는 재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시·도와 시·군·자치구에 시·도수산조정위원회 및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8.29>

제87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의 적격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개발계획의 심의
3. 마을어업의 어장관리규약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대단위개발수면의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제43조제4항 단서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6.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
7.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
8. 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건의
9.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

3. 입법예고 결과

- 시민 의견 : 접수된 의견 없음
- 충주시 의견
 - 생계형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임차 사용 부담 해소와 관계법령개정의 취지를 볼 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우리시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판단할 때 무분별한 주차 등으로 자동차 운행의 지·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음

4.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별첨

덧붙임 1.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2. 관계법령